

 루리 위키 >  가이드 · 고민 해결

홈 > 고민 해결

루리의 줍줍 · 응모·실무 가이드

이의신청서 작성 요령·제출 방법: 「이의 신청...

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



이의신청서 작성 요령·제출 방법: 「이의 신청서 제출 방법」 부터 「이의 신청서 양식」까지

루리

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, 행정청은 14일 이내에(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) 결과를 알려야 해요.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.

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, 행정청은 14일 이내에(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) 결과를 알려야 해요.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.

2026-10-30 확인 기준으로 행정기본법(법제처), 법제처 해석·보도자료, 생활법령정보, 온라인행정심판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. 법률 상담이 아니며, 개별 처분은 그 처분을 정한 개별 법률이 기한이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. 확인되지 않은 값은 공식 확인으로 표시했어요.

1 먼저 할 일: 처분을 받은 사람

순서	할 일	기한·메모
1	처분서를 받은 날 확인	기한의 시작이에요
2	처분서의 불복 안내 확인	이의신청 가능 여부, 기한, 제출처가 적혀 있는지 봐요
3	이의신청서 작성	처분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을 반드시 적어요
4	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	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
5	결과 통지 기다림	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(연장 시 최대 10일 추가)
6	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·소송	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

2 1. 「이의 신청서 제출 방법」: 법적 틀

행정기본법 제36조를 법제처 해석과 대조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행정기본법/제36조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행정기본법/제36조>)).

-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.
-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.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도 알려야 해요.
- 이의신청을 했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어요.
-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. 이의신청 결과로 처분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처분이 대상이에요.
-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도 그 법률에 없는 사항에는 이 조문이 적용돼요.
- 공무원 징계 등 인사,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, 형사·행형, 출입국·난민·귀화, 과태료 부과·징수 등은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요.

법제처 해석은 이의신청 제도를 처분청에 하는 간편한 불복 절차로 설명하고,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제36조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(<https://www.law.go.kr/LSW/cgmExpclnfoP.do?cgmExpclDatSeq=427754&mode=2&oficlsCd=350122> (<https://www.law.go.kr/LSW/cgmExpclnfoP.d>

o?cgmExpcDatSeq=427754&mode=2&oficCd=350122)). 조문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**공식 확인**하세요.

법제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19일부터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,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쟁송 대상이 되는 처분과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해요

(https://www.moleg.go.kr/board.es?mid=a10501000000&bid=0048&act=view&list_no=136320&tag=&pageCntBySelf=10&nPage=4&keyField=&keyWord=&cg_code= (https://www.moleg.go.kr/board.es?mid=a10501000000&bid=0048&act=view&list_no=136320&tag=&pageCntBySelf=10&nPage=4&keyField=&keyWord=&cg_code=)).

3 2. 「이의 신청서 작성 요령」과 「이의 신청서 양식」

시행령은 신청서에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을 적도록 정하는 것으로 확인돼요(조문 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**공식 확인**). 법으로 정한 전국 공통 고정 양식은 확인하지 못했어요. 개별 법률이나 기관에 별도 서식이 있으면 그걸 쓰세요. 아래는 일반적인 구성이에요.

항목	적용 내용
신청인	이름, 주소, 연락처
제출처	처분을 한 행정청
대상 처분	처분 명칭, 문서번호, 처분 내용
처분을 받은 날	연월일
이의신청 취지	어떻게 바꿔 달라는지 한 문장
이의신청 이유	처분이 잘못됐다고 보는 이유를 사실 순서로
증거 서류	처분서 사본, 소명 자료
날짜·서명	신청일과 서명 또는 날인

4 3. 「이의제기 신청방법」: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차이

구분	이의신청	행정심판
제출처	처분을 한 행정청	행정심판위원회(처분청 경유도 가능)
기한	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	처분을 안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
판단 주체	처분한 행정청	위원회

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 이름·주소, 피청구인과 위원회, 대상 처분, 처분을 안 날, 취지와 이유, 불복
안내 여부와 내용, 서명 또는 날인을 적어요. 온라인행정심판(<https://simpan.go.kr> (<https://simpan.go.kr>
r))이나 등기우편·방문으로 낼 수 있고, 안내 전화는 110이에요
([https://simpan.go.kr/eas/aa/ac/100/admjdgmInst.do?](https://simpan.go.kr/eas/aa/ac/100/admjdgmInst.do?cmnMenuCd=E03040100&subMenuIdx=01)
cmnMenuCd=E03040100&subMenuIdx=01 ([https://simpan.go.kr/eas/aa/ac/100/admjdgmInst.do?cmnMe
nuCd=E03040100&subMenuIdx=01](https://simpan.go.kr/eas/aa/ac/100/admjdgmInst.do?cmnMenuCd=E03040100&subMenuIdx=01))). 청구기간은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했어요
([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](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763&ccfNo=2&cciNo=1&cnpClsNo=3)
popMenu=ov&csmSeq=763&ccfNo=2&cciNo=1&cnpClsNo=3 ([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
ain.laf?popMenu=ov&csmSeq=763&ccfNo=2&cciNo=1&cnpClsNo=3](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763&ccfNo=2&cciNo=1&cnpClsNo=3))).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
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.

5 체크리스트

- 처분서를 받은 날을 확인했다
- 처분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한을 읽었다
- 개별 법률에 별도 이의신청 절차나 기한이 있는지 확인했다
- 이의신청서에 처분 내용과 받은 날을 적었다
- 접수 증빙(접수증, 등기 영수증)을 받았다
- 결과 통지일을 기록했다
- 필요하면 행정심판 기한(90일)을 계산했다

6 용어 정리

- **처분**: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며 국민에게 내리는 결정이에요.
- **이의신청**: 처분한 행정청에 다시 살펴봐 달라고 하는 절차예요.
- **행정심판**: 위원회가 처분의 위법·부당을 판단하는 절차예요.

- **피청구인:** 행정심판에서 처분을 한 행정청이에요.

7 자주 묻는 질문

Q. 「이의 신청서 제출 방법」은 꼭 종이로 내야 하나요?

A. 확인한 자료에는 제출 수단의 제한이 없었어요. 기관별 접수 방법은 처분서 안내나 기관에 **공식 확인**하세요.

Q. 이의신청하면 행정심판 기한이 늘어나나요?

A. 법제처 해석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해요.

Q. 「이의 신청서 예시」가 있나요?

A. 위 표의 항목 순서대로 쓰면 돼요. 공식 예시 서식은 확인하지 못했어요.

Q. 과태료 처분도 이의신청되나요?

A. 행정기본법 제36조는 과태료 부과·징수 사항에 적용되지 않아요. 과태료는 별도 법률의 이의제기 절차를 **공식 확인**하세요.

8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

- 행정기본법 제36조(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):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행정기본법/제36조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행정기본법/제36조>)
- 법제처 해석 「이의신청 제도는 무엇인가요?»:
<https://www.law.go.kr/LSW/cgmExpcInfoP.do?cgmExpcDatSeq=427754&mode=2&ofiClsCd=350122> (<https://www.law.go.kr/LSW/cgmExpcInfoP.do?cgmExpcDatSeq=427754&mode=2&ofiClsCd=350122>)
- 법제처 보도자료 이의신청 결과 통지: https://www.moleg.go.kr/board.es?mid=a10501000000&bid=0048&act=view&list_no=136320&tag=&pageCntBySelf=10&nPage=4&keyField=&keyWord=&cg_code= (https://www.moleg.go.kr/board.es?mid=a10501000000&bid=0048&act=view&list_no=136320&tag=&pageCntBySelf=10&nPage=4&keyField=&keyWord=&cg_code=)
- 생활법령정보 행정심판 청구기간: <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763&ccfNo=2&cciNo=1&cnpClsNo=3> (<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763&ccfNo=2&cciNo=1&cnpClsNo=3>)
- 온라인행정심판: <https://simpan.go.kr/eas/aa/ac/100/admjdgmlnst.do?cmnMenuCd=E03040100&subMenuIdx=01> (<https://simpan.go.kr/eas/aa/ac/100/admjdgmlnst.do?cmnMenuCd=E03040100&subMenuIdx=01>)



공유

공유하기

카카오톡



링크 복사

네이버 블로그

밴드

X

Facebook

 다른 고민 보기 · 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

9 마감 임박 공모전

출처: 루리의 줍줍(sungprofile.cloud) ·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